

일반공급(가점제)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 일반	○		① 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② 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③ 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④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) 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)
	○		⑤ 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⑦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	○	⑧ 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이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기타지역(수도권)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가점제 당첨자		○	① 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	○	② 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
		○	③ 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[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]
		○	④ 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	○	⑤ 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	○	⑥ 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	○	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
※ 상기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.

※ 대리인 신청 시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,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서류로 필요하며, 위임장(견본주택비치) 작성 시 접수가능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의 기록 대조일은 반드시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발급 받으시기 바람.

※ 기타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공급(추첨제)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 일반	○		① 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② 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③ 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④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)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⑤ 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⑦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	○	⑧ 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관(10년 이상)을 명시

※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함.

※ 대리인 신청 시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,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 서류로 필요하며,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 작성 시 접수가 가능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의 기록대조일은 반드시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발급 받으시기 바람.

※ 기타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